

판금도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론

韓勝憲

한국저작권연구소장·변호사

“유신 때 판금을 당한 이후 십몇년 동안이나 책을 못냈으니 그 판금기간만큼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발하면서도 음미해볼 만한 질문이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어야 할 정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불온도서의 판금 운운하면서 책의 간행 배포를 금지시킨 것은 적법한 처사가 아니었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상 저작권행사의 행사가 봉쇄된 셈이니 그만큼 보호기간을 늘려줘야 옳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두루 아다시피 저작권 보호기간의 계산에는 사망시기산주의와 공표시기산주의가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저작물의 공표후 또는 저작자 사망 후 30년간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구저작권법 하의 일반적 보호기간), 공포후나 저작자 사망후 15년쯤 지났을 무렵에 판금을 당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15년 동안 출판을 못하고 묶여 있는 동안에 저작권보호기간이 끝나버렸다고 하자.

만일 그와 같은 위법한 판금조치가 없었다면 저작권재산권자는 15년 동안에 그 저작물 이용(또는 그 이용의 허락)의 댓가로서 상당한 재산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판금으로 인하여 이런 기대수익을 상실한 사람은 한번쯤 ‘빼앗긴 세월 만큼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을까’하고 궁리를 해볼 만도 하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즉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측은 전쟁기간 중 자국민의 저작권이 일본내에서 보호받지 못했음을 이유삼아 그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구했던 것이다.

패전국인 일본은 이를 받아들여 ‘연합국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불온도서의 판금 운운하며 책의 간행 배포를 금지시키는 것은 적법한 처사가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작권행사의 행사가 봉쇄될 경우, 그만큼 보호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연합국민의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다(1952년). 그리하여 일본은 연합국 또는 연합국국민이 전시중에 가지고 있었거나 새로 취득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에다 전쟁기간(1941년 12월8일부터 대일강화조약 발효 전날까지)을 가산하여 보호해주기에 이르렀다.

‘연합국’이라고 하면 미·영·불 등 서너나라쯤으로 짐작하겠지만 실인즉 약 40개국이나 되었다고 하니 매우 복잡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한 저작권 전문가가 “도대체 언제 우리가 그런 나라들하고 싸운 일이 있었던가”라고 의아해 할 정도였다.

정부가 국민의 저작권 행사를 침해한 일이 없는데도 저작권재산권 보호기간을 몇번이나 연장한 예가 역시 일본에서 있었다. 일본은 저작권법 개정작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법개정으로 연장될 보호기간(사후 50년)의 적용을 못하는 저작권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보호기간 잠정연장입법을 4회나 단행하였다.

즉 1962년에 첫번째로 3년을 연장(따라서 당시의 저작권법상 생전 공표저작물의 보호기간인 사후 30년을 사후 33년으로)하였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끌게 되어 그후 3년 안에 법개정이 어렵게 되

자 1965년에 다시 2년을 연장하였고, 같은 사정에 의하여 1967년에 또다시 2년, 1969년에 1년을 더 연장하는 법개정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8년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저작권의 소멸을 방지하였다.

국민의 저작권보호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이 정도의 배려를 입법화했다는 점은 감탄할 만한 일이다.

우리 한국에서도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오래 계속되었고, 개정작업도 오래 끌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정조치가 늦어짐으로써 구법상의 저작권보호기간이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입법상의 조치를 한 일도 없거니와 그것을 거론한 일조차 없다.

저작자 사망후 30년주의에서 50년주의로 저작권보호기간이 확장되자, 새법 시행 전에 이미 사후 30년이 지난(그리고 아직 50년이 안되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부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물어오는 사례도 있었다.

구법상의 보호기간이 1987년에 끝나게 되어 있던 저작물은 새법의 덕을 입어 20년이거나 더 보호를 받는데 비하여, 저작자 사망후 30년이 1986년에 끝난 저작물은 그대로 묻혀 버리게 되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있었다.

1년의 차이가 20년의 차이를 빚어낸 셈인데, 만일 법의 전면 개정 이전에 보호기간 잠정연장의 부분개정만이라도 해서 국민의 권리를 아끼고 보호한다는 자세를 보였던들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런 데까지 머리가 못미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법에도 없는 판금 때문에 손해를 본 저작권자를 위해서는 무슨 사후 구제책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출판사에 대하여 배포금지 등의 협조요청을 한것뿐이지 판금조치는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할지도 모른다. 문제를 정면으로 따지고 나서는 정부는 으레 그런 상투적인 변명을 태연히 되풀이해왔던 것이다. 법에도 없는 판금을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오히려 법을 들먹인다.

그러나 그런 억지는 단 한가지 반문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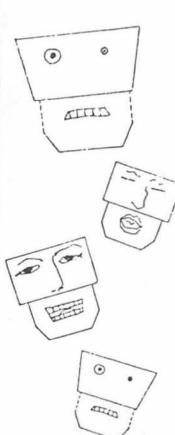
만일 정부가 판금조치를 한 일이 없었다면 작년 10월19일에 문공부가 431종이나 되는 책의 판금을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무슨 영문인지 대답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해금도서’ 181종은 ‘계속 판금’과 어떻게 다른가도 알고 싶다.

한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하여 판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권력의 위법을 묵과하지 않아야만 악습의 되풀이도 방지될 수 있다.

정권적인 이해타산에서 판금을 다만사로 했으면 늦게나마 국민 앞에 사과라도 해야 하거늘 그것을 풀어주었다고 도리어 생색을 내고 있으니 뭔가 계속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판금도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론은 신선한 충격이며 일고의 가치가 충분하다.

대화의 에티켓



- I. 생각 못하는 갈대
- II. 대화시대
- III. 남을 내 뜻대로
- IV. 가는 말 오는 말
- V. 조건부 긍정
- VI. 연설과 토론

집문당 서울 중구 신당동 251-1
☎ 252-4657, 234-2227

온라인컴퓨터사식 조판시스템가동

- 레자프린트 교정
- 입력에서 출력까지 즉시 처리
- 각종 서체 완비
- 컴퓨터가 내장된 수동사식 연결

진영사
☎ 733-5755

• 컴퓨터사진식자 • 수동사진식자
• 광고 기획 • 편집 • 제작 대행

찾습니다

현 직장에 그대로 재직하면서 새로운 일감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좀더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출판편집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이상 되고 타회사의 새로운 일들을 추가로 맡아 해나갈 여력이 있는 남녀 Idea Person을 아래와 같이 찾습니다.

- 모집분야—Editorial/Book-cover Design • Page Layout • Illust • 광고기획 • Logo 제작 • 사보편집 • 대지 및 수정작업
- 응모요령—이력서와 자기소개서 1통을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면접일자를 통보해 드립니다. 작품카피와 작품소개도 첨부 바랍니다.

능률영어사부설

한국출판서비스센터
Korea Book Publishing Services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1-1 (신당동) 701-4156, 4157